

안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·상속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2804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6. 2. 2.

제출자 : 안산시장

□ 제정이유

- 2015년 6월 22일자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」이 일부 개정·공포됨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득자(2009년 11월 28일 이후)에 대하여 양도 및 상속을 허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그 사업을 양도·상속할 수 있다. (안 제2조 제1항)
- 「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라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이 수립·시행중인 경우에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도 양도할 수 없다.(안 제2조 제2항)

□ 제정조례안 : 붙임 1

□ 신·구조문데비표 : 해당없음

□ 관련법령발췌서 : 붙임 2

□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□ 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
- 2015. 12. 9. ~ 12. 28.(20일간)

□ 기타참고사항

- 경기도 타 시·군 제정 현황 : 붙임3

- 안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·상속에 관한 조례 방침결정문 : 붙임 4

< 볼입 1 >

안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·상속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·상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·상속) 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그 사업을 양도·상속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「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라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이 수립·시행중인 경우에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도 양도할 수 없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대중교통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대중교통과장 이 장 원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택시계장 김 진 만
	담당자 성명·전화	엄 경 옥 (행정 2956)